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68

발의연월일: 2024 8. 5.

발 의 자: 박홍배・이기헌・이상식

문대림 • 민병덕 • 김태년

김현정 · 김남근 · 강득구

강훈식 • 한준호 • 이수진

박정현 • 박해철 • 김영진

이광희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지연이자 부과 등 여러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 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한 편,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체불사업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강화 및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적용제외 등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 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 나.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함)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 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 라.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 마.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6 신

설).

-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7 신설).
- 사.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급청구(안 제43조의8 신설)
- 아.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안 제49조).
- 자.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2조의2 신설).
- 차.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9조제2항).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로, "다음"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를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을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으로,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

는 날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 그"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여부를"을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로, "조에서"를 "조 및 제43조의4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을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로,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제1항 본문 중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2.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 관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상습체불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 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 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 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 ②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등이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 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 ④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 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그 밖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횟수 산정 및 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제3항 후단에 따라 제공되는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 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국가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 3. 국세청장에게 체불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 4.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 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 득에 관한 자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3조의7(출국금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임금등을 체납한 상습체불사업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의8(체불임금등에 대한 지급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임금등의 3배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1. 2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6개월 이상인 경우

- 2.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6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임금등의 체불 기간・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 2.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 3. 제37조(제4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 ③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49조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 고자료
 -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09조제2항 중 "제43조"를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 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상습체불사업주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이자) ① -----다음 각 호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 따른 날까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 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는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 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 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 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신 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 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 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신 설>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 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 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 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 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 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
라 정하는 날
② <u>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u>
<u>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u>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
<u>는 퇴직한해당 임금에</u>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
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
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
<u>지 아니한다.</u>
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
른 퇴직급여등, 그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 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 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u>여부</u> 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이하 이 <u>조에서</u>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② (현행과 같음)
③
<u>d</u>
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
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u>-조 및 제43조의4에서</u>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 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 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 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 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 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 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 · 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 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의	규정	을 건	덕용적	할 때	공	무원	<u></u>
	로 -	본 <u>다</u> .						
	<u>(5)</u>	제1형	나에	따른	트 명	단	공가	의
	구최]적인	내	용,	기긴	<u>무</u>	! 빙	-법
	등	명단	공기]] 에	필요	_한	사힝	-은
	<u>대통</u>	령령	<u> </u>	그 정	한다	<u>.</u>		
제	43조	돌의3(임금	구등	체불	·자호	문의	제
	공)	1						
	다음	- 각	호 9	의 ㅇ]느	하니	- 에	해
	당히	}는						
				•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u><신 설></u>

②·③ (생 략) <신 설>

-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 2.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① 고용 보조·지원 제한)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상습체불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한다)로 정할수 있다.
 -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 상 체불한 사업주
-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 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 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 ②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 주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 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 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국 가등이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 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불이익 조치
- ④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 공받은 자료를 제3항 각 호에 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은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
 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그 밖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횟수 산정 및 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제3항 후단에 따라 제공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① 고용

<신 설>

<신 설>

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나 전문성을 갖춘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 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 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 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국가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 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 (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 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 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 3. 국세청장에게 체불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 4.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산보험의 보험료장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임금채권보

<신 설>

장법」제7조,제7조의2및제8조에따른대지급금에관한 자료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 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및 피보 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 공받기 위하여 임금, 근로제공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의7(출국금지) ① 고용노동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등을 체납한 상습체불사업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 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신 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의8(체불임금등에 대한 지급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1. 2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개월 수가 총 6개월 이상인경우
 - 2.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 제49조(임금의 시효) ------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신 설>

총액이 6개월 이상의 통상임 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 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임금등의 체불 기간・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 2.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 3. 제37조(제43조제3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 ③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청구 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5년간-----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 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 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109조(벌칙) ① (생 략)

② 제36조, <u>제43조</u>, 제44조, 제4 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 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 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다. <u><단서</u>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 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 료 등을 면제한다.

제10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제43조제1항 및	제
<u>2 ক্ট</u>	

<u>신설></u>	<u>다만, 제43조의4에</u>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